

감사위원회 규정

2024. 03. 29. 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루닛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운영규정)

-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이 운영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장 권한과 의무

제 4 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한다.

제 5 조 (권한)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9.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에 대한 권한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처리한다.

제 6 조 (의무)

- ① 감사위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이사회** 규정 제3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에도 물론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성

제 7 조 (선임 및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를 준용하여 적용해야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4조 제1항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 ④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감사부설기구)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감사부설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내부감사인력”이라 함)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간주한다.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의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대표이사, 이사와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 영

제 11 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12 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3일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우편,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4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감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 및 이사가 위임한 자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7.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포함)의 평가
 8. 감사결과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9.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0. 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11.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5.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6.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7.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8.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9.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폐 및 제·개정에 대한 승인

제 16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 18 조 (평가)

- ① 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 ② 위원회 평가는 사전에 설정한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제 19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및 의견교환)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5 장 수행 업무

제 20 조 (감사업무활동)

- ① 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사업무활동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 기업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
 3.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4.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5.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6.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7. 재무리스크 요인 검토
 8.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과 주주총회에의 사후보고
 9.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0.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비감사활동의 적절성 평가
 11.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2. 위원회 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13. 위원회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 ② 본 조에서 정한 감사 활동 이외의 사항은 법령, 혹은 규정에 의한 모범규준 매뉴얼을

준용한다.

제 21 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2024.03.29.)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